

**[환경사범수사사례]**

## 공공수역 석유제품 유출 행위

자료제공 : 전주지방환경청

### I. 사건의 개요

#### 1. 사건의 발단

2002.8.3 오전 9:30시경 익산 제2산업단지 배수로에서 다량의 기름 냄새가 발생하면서 산단 배수로가 오염되고 있는 것을 수질감시초소의 공익근무요원이 감지하여 신고함

#### 2. 수사경위

공익근무요원의 익산 제2산업단지 배수로 수질오염사고 신고에 따라 전주청 환경사범경찰관 이○○가 석유 등의 기름 냄새가 산단 배수로에서 다량 발생하고 있음을 현지 확인하고 산단 배수로에 연결된 우수로를 추적 조사 실시

#### 3. 수사결과

산단 내 배수로를 추적한 결과 기타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(주)○○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나프타가 저장탱크에서 누출되어 방류벽안 우수제거용 배출밸브를 통해 사업장 우수로를 거쳐 산단 배수로로 유출되고 있음을 적발함

### II. 사건 수사추진 일지

- 2002. 8. 3. 익산시 익산 제2산단 배수로 수질감시초소에서 수질오염사고 신고
- 2002. 8. 3. 석유제품인 나프타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 적발
- 2002. 8. 5. 환경범죄인지 보고(사범경찰관 청장)



- 2002. 8. 5. 피의자 출석요구(사법경찰관 피의자)
- 2002. 8. 9. 피의자 신문
  - 피의자 신문조서, 주거진술서, 수사자료표 작성
- 2002. 8. 9. 피의자 범죄경력조회(사법경찰관 전주북부경찰서)
  - 수사자료표 첨부
- 2002. 8. 27. 수사결과보고(사법경찰관 청장)
- 2002. 8. 27. 사건송치서류 작성(사법경찰관)
  - 사건송치서, 의견서 등
- 2002. 8. 28. 사건송치(사법경찰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사건과)

### Ⅲ. 수사활동 상황

#### 1. 사건의 인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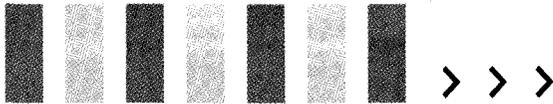
2002. 8. 3. 익산 제2산업단지 배수로의 수질오염사고 신고에 따라 환경사법경찰관 이○○가 산업단지 배수로에 기름 성분이 다량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산단 배수로에 연결된 우수로의 각 맨홀을 열어 기름 유출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, 익산시 ○○동 000번지 소재 기타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(주)○○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나프타 저장탱크에서 나프타가 누출되어 방류벽안 우수제거용 배출밸브를 통해 사업장 우수로를 거쳐 산단 배수로로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함

#### 2. 사건의 입건

(주)○○에서 원료로 사용 중인 나프타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써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를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동사업장 공장장인 ○○○와 법인인 (주)○○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

#### 3. 범죄사실(수사결과)

(주)○○는 기타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당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 중인 나프타 저장탱크 31㎡에서 플랜즈 부분이 고장나 생긴 틈으로 2002. 8. 3. 09:00~



## **【환경사범수사사례】**

09:30경부터 10:00경까지 나프타가 약 2.5톤 가량이 저장탱크의 방류벽안 바닥으로 누출되어 방류벽안 우수제거용 배출밸브를 통해 사업장 우수로를 거쳐 산단 배수로로 유출되어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를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함.

### **4. 사건의 송치**

이에 전주청에서는 2002. 8. 28. 피의자 ○○○와 법인인 (주)○○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관할 지검(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)에 불구속 기소함.

## **IV. 수사결과와 분석·평가**

### **1. 총 평**

익산 제2산단 배수로에서 다량의 기름 냄새가 발생하고 있다는 수질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오염사고 신고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산단 배수로에 연결된 우수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 기타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(주)○○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인 나프타 저장탱크에서 나프타가 누출되어 방류벽안 우수제거용 배출밸브를 통해 사업장 우수로를 거쳐 산단 배수로로 유출되고 있음을 적발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관할지검에 불구속 기소함

### **2. 잘된 점**

수질감시요원의 신고에 의한 신속한 현지 출동 및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단 내 사업장에서 석유제품인 나프타가 유출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, 사업자 및 익산시와 공동으로 긴급방제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여 인근 농수로 및 수용하천인 유천의 수질 보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, 현장 사진확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음

### **3. 미흡한 점**

현장 확인시 유출된 나프타의 정확한 양을 산정하지 못하여 수사 진행 중에 유출



된 양이 다소 차이가 발생함

#### 4. 향후 유사사건 수사시 보완·반영할 사항

동 사건을 수사시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 유출된 경위, 시간, 양 등을 최대한 명확히 조사하여 위반확인서에 명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

### V. 참고사항

#### 1. 수사시 착안사항(수사 노하우 등)

환경오염사고 신고에 따른 현지 확인조사시 유출된 기름성분의 냄새를 감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험물 및 유독물 사용하는 업체를 위주로 현장을 추적 조사한 결과 쉽게 원인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.

#### 2. 수사과정 중에 드러난 특이사항

금번 사건의 경우 현지 확인자가 산단 내 배출사업장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라 쉽게 원인자를 추적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산단 내 우수로 도면 및 각 사업장별로 사용하는 원료 중 위험물이나 유독물의 종류 및 사용량, 특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
#### 3. 기 타

동 사건의 경우 사업장의 현장관리자가 위험물저장시설의 방류벽안 우수제거용 밸브를 강우시에만 개방을 하고 평상시엔 항상 폐쇄를 하였으면 발생되지 않을 오염사고로서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원료 중 위험물, 유독물 저장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◀